

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8-24
----------	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이유

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 등을 상위법령에 맞추고, 조례로 위임된 위임 범위를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더 명확히 하는 등 이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위임범위를 명확히 함(안 제2조)

- 아이 ⇒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
- 군복무 ⇒ 「병역법」에 따른 의무복무
- 아동 ⇒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
- 신용회복위원회 ⇒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

나.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(안 제3조)
다. 그 밖에 상위법령에 맞추어 용어, 문장 등을 수정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, 「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」 제1조의2, 「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」(위임행정규칙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-195호)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타사항

- 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(3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: '18. 1. 11.~1. 30.
 - (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- (5) 성별영향분석: 해당사항 없음
- (6) 법제처 입법컨설팅 사례 반영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2조제6호”를 “제2조제6호 및 제12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“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의 사유”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”를 ““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”란”으로 한다.

같은 조 제1호 중 “입원”을 “가구원 중 입원”으로 “등으로”를 “등의 사유로”로 “미비”를 “미미”로 하고,

같은 조 제2호 중 “아이양육”을 “아이(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를 말한다)양육”으로 “미비”를 “미미”로 하며,

같은 조 제3호 중 “주 소득자의 학업, 군복무 등으로”를 “주소득자가 「병역법」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거나 학업으로”로 하고,

같은 조 제4호 중 “아동”을 “아동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)”로 “전전하며”를 “ 옮겨 다니며”로 하며,

같은 조 제5호를 삭제고,

같은 조 제6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,

같은 조 제5호(중전 제6호) 중 “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”를 “급여가 중지된 가구로서”로 하고,

같은 조 제7호(중전 제8호) 중 “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

결정된 날부터”를 “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날부터”로 하며,

같은 조 제11호(중전 제12호) 중 “신용회복위원회”를 “「서민이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”로 하고,

같은 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

13.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(다만,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)

같은 조 제14호 중 “제13호”를 “제12호”로 “경우”를 “경우로서 거창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”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긴급지원심의위원회)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12조제4항에 따라 거창군에 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거창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제2조제6호 및 제12조제4항----- -----</p>
<p>제2조(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)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제6호에서 “<u>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의 사유</u>”란 <u>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입원 환자, 치매 노인, 알콜 중독자,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,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</u> 2. <u>임신, 출산, <u>아이양육</u>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</u> 3. <u>주 소득자의 학업,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</u> 4. <u>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, 폐가, 천막집, 다리 밑,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</u> 5. <u>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, 알콜·도박 중독,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</u> 6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<u>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</u>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<u>급여를 신청하였으나</u>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<u>급여를 신청 후</u> <u>급여종류별 보장 부</u> 	<p>제2조(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) ----- “<u>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</u>”란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가구원 중 입원-----등의 사유로</u> -----<u>미미</u>----- 2. -----<u>아이(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를 말한다)</u> <u>양육-----미미-----</u> 3. <u>주소득자가 「병역법」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거나, 학업으로-----</u> ----- 4. <u>아동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)-----</u> -----<u> 옮겨 다니며</u>----- <p><삭 제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. ----- <u>급여가 중지된 가구로서</u>----- ----- 6. ----- ----- ----- 7. ----- -----<u>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</u>

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
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

9. 실직, 폐업 등 사유로 수도, 가스,
전기 등 그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
하여 공급 중단 또는 중단 예정이거나
공급이 제한 조치된 가구의 생계가
어려운 경우

10. 실직, 폐업 등 사유로 「고용보험
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
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용보험료
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, 「국민건강
보험법」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「국민
연금법」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
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

11. 실직,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
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
어려운 경우

12.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
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
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

13.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
<신 설>

1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
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<신 설>

지 아니한 날부터-----

8. -----

9. -----

10. -----

11.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
법률」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

12. -----

13.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에 따른 범
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
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부터 1
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범죄
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
(다만,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
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)

14. ----- 제12호-----
----- 경우로서 거창
군수가 인정하는 경우

제3조(긴급지원심의위원회) 「긴급복지
지원법」 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에 두는
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은 「국민기초
생활보장법」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
설치한 거창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
한다.